

## 제 목: 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·감리결과 조치

□ 중권선물위원회는 5월 18일 제10차 회의에서,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·공시한 ㈜리드 등 3개사에 대하여 검찰고발, 중권발행제한, 감사인지정 등의 조치를 의결하였습니다.

(붙임) 조사·감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



☞ 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. http://www.fsc.go.kr 금융위원회 대 변 인 prfsc@korea.kr



"혁신금융,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"

## 조사·감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

(제10차 증권선물위원회, 2021.5.18. 의결)

(단위 : 백만원)

회사명 등	지 적 사 항	조 치
㈜리드	[회사]	회 사 :
(쥐리드 결산기 : 2017.3.31. 2017.6.30. 2017.12.31. 2018.12.31. 비상장법인 업종 : 디스플레이 제조용 기계 제조업	【회사】         ① 대여금 허위계상 ('17년 : 21,931백만원, '18년 : 58,077백만원)         - 회사는 경영진 등의 횡령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자금횡령액을 대여금으로 허위계상하고,         - 채권의 회수가능성이 높은 것처럼 보이기 위해 합리적 근거 없이 담보가치를 높게 평가하거나 보증서 등을 허위 작성하여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함         ② 기계장치 허위계상 ('18년 : 2,015백만원)         - 회사의 대표이사 등은 기계장치를 매입한 것처럼 가장하여 회사자금을 유출하였으며, 장부상 허위 기계장치를 계상하고, 손실은 반영하지 않음         ③ 매출 과대계상 ('17년 1분기 : 6,174백만원, '17년 반기 : 5,251백만원, '17년 3분기 : 5,712백만원)         - 회사는 지급의무가 아직 발생하지 않은 외부협력사 매입대금을 누적발생원가에 포함하여 건설계약 진행률을 임의로 높게 산정함으로서 매출을 과대 계상함         ④ 소액공모 공시서류 기재 위반         - 회사는 소액공모 공시서류에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작성된 2017년 반기 재무제표를 사용한 사실이 있음         ⑤ 외부감사 방해         - 회사 대표이사 등은 2018년 연결재무제표 등에 대한 회계감사와 관련하여 대여금 허위계상 및 기계장치 허위계상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        - 채무보증의 효력이 없는 허위 채무보증계약서를 작성하여 감사인에게 제시하고, 부동산 근저당권 등기를 임시로 설정하여 감사인에게 제시한 후 감사보고서일 이후 곧바로 말소하였으며,         -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후 감사인에게 제출 함으로서 감사인의 정상적인 외부감사를 방해함	<ul> <li>증권발행제한 12월</li> <li>과징금</li> <li>※ 회사 관계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</li> <li>과태료 48백만원</li> <li>감사인지정 3년</li> <li>前대표이사·감사해임권고 상당</li> <li>前담당임원면직권고 상당</li> <li>검찰고발(회사,前대표이사 등 4인)</li> </ul>

(감리집행기관 : 금융감독원 회계심사국)

(단위 : 백만원)

회사명 등	지 적 사 항	조 치
씨앤티85㈜ (舊 ㈜포스링크)	【회사】	회 사 :
	① 매출 및 매출원가 허위계상 ('15년 : 1,484백만원)	- 증권발행제한 6월
결산기: 2015.12.31. 2016.12.31. 2017.3.31. 2017.6.30. 2017.9.30.	- 회사는 영업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서류상으로만 ㈜OOO의 특수관계자 등으로부터 모터보트 및 바지선을 매입한 후, 이를 다시 ㈜OOO에게 매도하는 방법으로 매출 및 매출원가를 허위계상한 사실이 있음	(前대표이사 10백만원)
   코스닥시장 상장법인		- 시정요구
업종 : 국내외 지원 개발· 판매업 등	<ul> <li>② 대여금에 대한 대손충당금 과소계상 등 ('16년~'17년 3분기 : 850백만원)</li> <li>- 회사는 前대주주 등이 회사 자금을 제3자에게 대여하는 방식으로 횡령한 금액 중에서, 일부 대여금 및 매도가능증권에 대하여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지 않거나 손상처리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</li> </ul>	※ 담당임원 해임권고 조치와 관련하여 이미
	<ul><li>③ 특수관계자 거래내역 주석 미기재 (16년 : 674백만원)</li><li>- 회사는 ㈜OOOOO 등에 대한 대여금 담보로 前대주주로부터 회사 보통주식을 담보로 제공</li></ul>	
	받았으나, 이를 주석으로 기재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④ 증권신고서 기재 위반	
	- 회사는 증권신고서에 상기의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작성된 2015년, 2016년, 2017년 반기 재무제표를 사용한 사실이 있음	
	⑤ 소액공모 공시서류 거짓기재	
	- 회사는 소액공모 공시서류에 상기의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하여 작성된 2015년 재무제표를 사용한 사실이 있음	

(감리집행기관 : 금융감독원 회계심사국)

(단위 : 백만원)

회사명 등	지 적 사 항	조 치
㈜케이에스벽지 (舊 ㈜에프티벽지)	【회사】	회 사 :
결산기 : 2016.12.31.	① 판매비와관리비 과대계상 ('16년 : 751백만원)	- 증권발행제한 8월
비상장법인	- 회사는 지배회사가 인식할 인건비를 근거없이 대신 인식하여 판매비와관리비를 과대계상한 사실이 있음	- 감사인지정 2년 - 시정요구
업종:벽지의 제조 및 판매		- 검찰통보
	② 외부감사 방해	(회사, 前대표이사 등 2인) ※ 담당임원 해임권고
	- 회사는 2016년 재무제표 등에 대한 회계감사와 관련하여 판매비와관리비 과대계상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	
	- 허위의 사업계획서 등을 감사인에게 제출함으로서 감사인의 정상적인 외부감사를 방해함	

(감리집행기관 : 금융감독원 회계심사국)